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0
----------	------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석 심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상의 서면 심의 개정 조치 요구

## 3.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연임 삭제)
- 다. 서면심의 삭제
- 라. 세부변경사항: 신·구대비표 참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참조)
- 다. 협의: 상위법령의 후속 조치로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규제신설,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강화):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 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 분석 평가: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별첨 4 참조)
  - 6) 서면심의 삭제 관련: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별첨 5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을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5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b></p> <p>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b>제3조(임무 및 임기)</b></p> <p>① (생략)</p> <p>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b></p> <p>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b>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b></p> <p>① ----- ----- ----- -----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b>제3조(임무 및 임기)</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lt;삭제&gt;</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행정6급 김현정 (02-3999-636)

【별첨 3】

□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4】

<b>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b>				
관리번호	2016A 서울교육013			
정책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김현정	전화번호	02-399-9636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박수정	전화번호	02-3999-307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6년 10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6년 10월 14일			
<p>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10월 14일</p>				

【별첨 5】

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는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을 출석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동법 제32조 제3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는 규정을 들어 조례로 계약심의위원회의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은 서면심의를 조례에 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현행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구(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과장), 인천광역시(회계담당관), 강원도지사(회계과장), 광주광역시(회계과장), 대전광역시(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회계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복지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지원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정보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4546 ( 2016.09.01. ) 접수 교육재정과-17836 ( 2016. 9. 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545 /전송 3527 / esther19@moi.go.kr / 공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갑니다.